

가스용품의 합격표시(제61조 관련)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는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국가통합인증마크(이하 "KC마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각인(刻印)하거나 검사증명서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용품이 일관공정으로 제조되는 경우에는 제조공정 중에 그 합격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1. 배관용 밸브의 합격표시는 각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높이: 200A 미만인 경우에는 5mm, 200A 이상인 경우에는 10mm

2. 압력조정기·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콧·전기절연이음관·전기용착폴리에틸렌이음관·이형질이음관·신속 커플러는 가목의 검사증명서, 강제혼합식가스버너·연소기·다기능보일러는 나목의 검사증명서, 고압호스·염화비닐호스·금속유연호스는 다목의 검사증명서를 각각 부착한다. 또한, 복수 인증제품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제22조의3에 따라 별도로 고시하는 경우에는 KC마크의 높이와 색상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검사증명서의 크기: 15mm×15mm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검사증명서의 크기: 30mm×30mm. 다만, 이동식부탄연소기의 경우에는 20mm×20mm로 한다. 은백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용 대형연소기·온수기·온수보일러·다기능보일러·난방기·오븐렌지·냉난방기 및 강제혼합식가스버너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로 한다.
다.		검사증명서의 크기: 20mm×16mm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호스제조공정 중 합격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크기와 바탕색을 그 호스규격에 맞게 할 수 있다.